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소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양 권 석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6월 2일 박재국 의원 등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9년 6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 및 체계를 정비하여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칭을 알기 쉽게 변경.

- 조례명을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로 개정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지방자치법 제34조제2항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지방자치법시행령 제35조제1항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4조→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라. 충청북도 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직제변경(안 제14조)

- 도 기획관 → 충청북도 정책기획관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 및 체계 정비

- “~라 함은”을 “~란”으로 변경
-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변경
- 그 밖에 및, 또는, 인, 이외, 기타 등의 자구를 알기쉬운법령 정비체제에 맞춤.

4. 검토결과

박재국 의원 등 7인으로 부터 발의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명을 개정하고 둘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며 셋째, 충청북도 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제를 변경하고 넷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각 조문의 표현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은 없음.

붙임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